

2021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동아ST(주)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기업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기업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I. 기업의 개요	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5
1.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5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5
3. 지배구조 특징	6
4. 지배구조 현황	7
III. 주주	8
1. 주주의 권리	8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13
IV. 이사회	20
1. 이사회 기능	20
2. 이사회 구성	24
3. 사외이사의 책임	32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35
5. 이사회 운영	36
6. 이사회 내 위원회	40
V. 감사기구	44
1. 내부 감사기구	44
2. 외부감사인	50
VI.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52
1. 계열회사의 현황	52
2. 사회적가치 경영	53

3. 준법경영.....	54
4. 소비자중심경영.....	54
VII.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55
[첨부] 관련 규정.....	56
(1) 정관.....	56
(2) 이사회 규정.....	72
(3) 감사위원회 규정.....	78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84
(5) 평가보상위원회 규정.....	87

I. 기업의 개요

▶ 기업명 :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 작성담당자 : (정) 내부회계관리팀 김덕형 팀장

02-920-8194 coolwaves@donga.co.kr

(부) 내부회계관리팀 전미령 책임

02-920-8928 jmr@donga.co.kr

▶ 작성기준일 : 2021.12.31

▶ 기업개요 (기업집단 : 동아쏘시오그룹 / 지주회사 : 동아쏘시오홀딩스㈜)

최대주주 등	강정석 외 12 명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¹⁾	24.59% ²⁾
		소액주주 지분율 ²⁾	52.37% ²⁾
업종(금융/비금융)	비금융	주요 제품	그로트로핀,모티리톤, 슈가논,오팔몬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미해당)	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기업집단명	동아쏘시오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억원)			
	2021 년 ³⁾	2020 년 ³⁾	2019 년 ³⁾
연결 매출액	5,932	5,867	6,123
연결 영업이익	156	340	566
연결 계속사업이익	128	271	709
연결 당기순이익	128	271	709
연결 자산총액	11,160	9,807	10,088
별도 자산총액	11,153	9,849	10,123

1) 최근 공시한 사업보고서 기준

2) 소수점 2 자리까지 표기(소수점 3 자리에서 반올림)

3) 가장 최근 시점 관련 사항을 도표 좌측부터 기재

Ⅱ. 기업지배구조 현황

1.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정보공개, 내부 의사결정주체의 독립성,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홈페이지(<http://www.donga-st.com>) 및 DART(<http://dart.fss.or.kr>)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정관, 이사회 규정, 주주에 관한 사항, 이사회 및 감사기구에 관한 사항 등 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 당사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 의사결정주체인 이사회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와 분리하여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인 평가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현하고, 회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면하는 현안을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영전반(김범준 이사), 제약 R&D(류재상 이사), 보건의료행정(최희주 이사), 제약산업 및 정책관련 전문(김학준 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말,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없지만 기업경영 및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근감사제도를 대신하여 감사위원회를, 2017년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서 사외이사가 과반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최적화된 경영 의사결정이 가능한 안정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강정석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24.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비고
강정석	본인	보통주	28,210	0.33	-
김민영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1,476	0.02	-
이성근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601	0.01	-

신유석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1,144	0.01	-
정수환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370	0.00	-
방미영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290	0.00	-
도현미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50	0.00	-
김미경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295	0.00	-
동아쏘시오홀딩스	계열사	보통주	1,968,765	23.31	-
상주학원	재단	보통주	29,754	0.35	-
수석문화재단	재단	보통주	45,338	0.54	-
합계			2,076,293	24.58	-

3. 지배구조 특징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총원 7명 중 사외이사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전체 구성원 대비 약 57%), 2018년 이후부터 이사회 의장직은 대표이사직과 분리하여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희주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능률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이사회 내 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산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후보 추천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업무 및 회계감사,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가보상위원회는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개별 성과를 평가하여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말,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없지만, 주주가치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3)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다양성

당사는 경영 전반(김범준 이사), 제약R&D(류재상 이사), 보건의료행정(최희주 이사), 제약산업 및 정책관련 전문(김학준 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경영진

을 감독·견제하는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다양한 사외이사 구성은 일반적인 경영전문가 뿐만 아니라 사업적 특성에 맞는 제약R&D 및 보건의료행정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어 이사회에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4. 지배구조 현황

기관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대표자) (사내외이사여부)	주요심의내용
이사회	4/7	최희주 (사외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의 소집 및 재무제표승인 등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회사 경영에 관한 기본방침 및 신규사업의 추진 · 대표이사의 선임,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 · 신주 및 사채의 발행, 배당 결정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3/3	김범준 (사외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분·반기 회계결산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 · 외부감사인 선임, 변경 및 해임에 대한 승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3	김학준 (사외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평가보상위원회	3/3	류재상 (사외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성과평가기준 및 보상기준 수립 · 회사 및 대표이사의 성과목표 승인 · 회사 및 대표이사의 성과평가

주 1) 상기 기재사항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Ⅲ. 주주

1. 주주의 권리

(핵심원칙 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당사는 법적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주주총회 약 3주 전 소집결의 및 2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주분들에게 일시, 장소, 의안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9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주주총회 개최 3주 전에 진행하였으나,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

구분	제9기 주주총회	제8기 주주총회	제7기 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2.02.25(금) (주총 31일 전)	2021.02.26(금) (주총 26일 전)	2020.02.28(금) (주총 25일 전)
소집공고일	2022.03.04(금)	2021.03.02(화)	2020.03.09(월)
주주총회개최일	2022.03.28(월) 오전 9시	2021.03.24(수) 오전 9시	2020.03.24(화) 오전 9시
공고일과 주주총회 일 사이 기간	주총 24일 전	주총 22일 전	주총 15일 전
개최장소/지역	본점/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길 18 동아ST(주) 신관 7층 대강당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공지		
외국인주주통지법	자사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주주총회 개최 관련사항 공지, 주요주주에게 영문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	자사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주주총회 개최 관련사항 공지, 주요주주에게 영문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	주요주주에게 영문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3명 출석	6명 출석	7명 전원출석
감사위원 출석여부	1명 출석	3명 전원출석	3명 전원출석
주주발언 주요내용	발언주주 없음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기 정기주주총회는 상정 안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직접 참여 및 의결권 대리행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의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출석한 주주는 위임장 제출을 포함하여 157명이며, 출석 주식수는 4,472,036주입니다. 이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53.0%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에게도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주총회 종료 직후 결과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 및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제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도입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참고서류를 공시하여 모든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서면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현황]

구분	제9기 주주총회	제8기 주주총회	제7기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2.03.25(금) 2022.03.30(수) 2022.03.31(목)	2021.03.26(금) 2021.03.30(화) 2021.03.31(수)	2020.03.13(금) 2020.03.20(금) 2020.03.26(목) 2020.03.27(금)
정기주주총회일	2022.03.28(월)	2021.03.24(수)	2020.03.24(화)
개최장소/지역	본점/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길 18 동아ST(주) 신관 7층 대강당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여부	예	예	예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전자투표 실시여부	예	예	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예	예	예

당사의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세부 찬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별 찬반 내역]

(단위 : 주)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 주식수
						반대·기권 주식수
제1호 의안	보통	제9기(2021.01.01~20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가결	8,446,325	4,472,036	4,403,705 (98.5%)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68,331 (1.5%)
제2호 의안	보통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8,446,325	4,472,036	4,444,901 (99.4%)
						27,135 (0.6%)
제3-1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자 김민영)	가결	8,446,325	4,472,036	4,452,084 (99.6%)
						19,952 (0.4%)
제3-2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자 박재홍)	가결	8,446,325	4,472,036	4,460,292 (99.7%)
						11,744 (0.3%)
제4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김범준)	가결	8,446,325	2,133,492	2,117,999 (99.3%)
						15,493 (0.7%)
제5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8,446,325	4,472,036	4,443,579 (99.4%)
						28,457 (0.6%)

주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3% 초과 의결권 제한

[제8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별 찬반 내역]

(단위 : 주)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 주식수
						반대·기권 주식수
제1호 의안	보통	제8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8,438,390	5,158,378	4,942,694 (95.8%)
						215,684 (4.2%)
제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8,438,390	5,158,378	5,147,583 (99.8%)
						10,795 (0.2%)
제3-1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자 엄대식)	가결	8,438,390	5,158,378	4,163,633 (80.7%)

						994,745 (19.3%)
제3-2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자 한종현)	가결	8,438,390	5,158,378	4,266,541 (82.7%)
						891,837 (17.3%)
제3-3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자 최희주)	가결	5,303,846	5,158,378	5,040,217 (97.7%)
						118,161 (2.3%)
제4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 사 선임의 건 (후보자 류재상)	가결	5,605,022	2,723,396	2,666,481 (97.9%)
						56,915 (2.1%)
제5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 최희주)	가결	5,605,022	2,723,396	2,639,530 (96.9%)
						83,866 (3.1%)
제6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8,438,390	5,158,378	5,130,790 (99.5%)
						27,588 (0.5%)

주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3% 초과 의결권 제한

(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제안권 처리는 당사 경영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 접수 확인서를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회신 드립니다. 당사는 이처럼 주주제안권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를 주주에게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주주 제안권 행사 안내가 주주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사전에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를 정리하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은 없었으며, 이에 주주제안 관련 별도의 이행상황은 기재할 수 없었습니다.

제안 일자	제안 주체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상황	가결여부	찬성률 (%)	반대율 (%)
최근 3년간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 363 조의 2 에 따른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회신 주요 내용
최근 3년간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 제출이 없었습니다.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당사는 별도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배당 관련 정보를 주총 3주 전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주총 승인 당일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시기 등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정책을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 미래의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내부유보와 이익의 주주환원을 고려, 배당률 20% 수준을 유지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금은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Cashflow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자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당기에도 COVID-19 및 제약사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힘든 경영상황 속에서도 현금배당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제5기(2017년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내부 유보자금을 활용하여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래의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내부유보와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별 배당 내역]

사업 연도	결산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액면가	주당 배당금 ¹⁾	총 배당금	시가 배당률 ²⁾	배당성향 ³⁾	
								연결기준	별도기준
2021	12	보통주	-	5,000	1,000	8,440,847,000	1.4%	65.86%	70.53%
		종류주	-	-	-	-	-		
2020	12	보통주	-	5,000	1,000	8,438,390,000	1.2%	31.13%	30.52%
		종류주	-	-	-	-	-		
2019	12	보통주	-	5,000	1,000	8,438,390,000	0.9%	11.90%	12.99%
		종류주	-	-	-	-	-		

1) 1 주당 연도별 지급액 총액

2) 주주명부 폐쇄일 2 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 주일 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 주당 배당금의 비율

3) 배당금 총액 / 연결 또는 별도 당기순이익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핵심원칙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 현황

당사가 발행 가능한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이 있으며, 우선주식의 경우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으로 우선주 발행 시 상환권, 전환권, 상환전환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이며, 그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3,000,000주입니다. 2022년 5월 31일 기준 당사의 총 발행 주식수는 보통주 8,446,535주입니다. 당사는 2021년 8월 3일 1,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2021년 9월 3일부터 일부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이 변동되었습니다. 향후 전환청구권 행사로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이 추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3년간 별도로 개최된 종류주주총회 또한 없습니다.

[주식발행 현황]

(기준일 : 2022.05.31, 단위 : 주)

구분		발행가능주식수(주) ¹⁾	발행주식수(주) ²⁾	발행비율 ³⁾	비고
보통주		30,000,000	8,446,535	28.16	
종류주	우선주	3,000,000	-	-	

1) 기준일 현재 수권주식수(정관상의 주식수)

2) 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기준일 현재까지 감소(감자, 이익소각 등)한 주식의 총수

3) 발행주식수/발행가능주식수*100(소수점 3 자리에서 반올림)

(2) 공평한 의결권 보장 및 충분한 기업정보 적시 제공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기업정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당사는 2021년 한국거래소에서 선정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추후 지배구조헌장 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3) 주주와의 의사소통 현황

당사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 및 기업가치 극대화, 투자자와의 신뢰형성을 위해 다양한 IR 활동을 정기적, 수시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분기 영업잠정실적을 공시한 이후 애널리스트 대상 실적발표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잠정실적 공시 후 분기 IR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실적발표회를 진행하는 등 투명하고 공평한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적발표 전 2주간은 IR활동 중단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NDR(Non Deal Roadshow)을 실시하고 있으며, 증권사가 개최하는 국내외 Conference나 Corporate Day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IR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투자자를 위해 매년 영문으로 Annual Report를 제작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2019 사업년도부터는 관련 내용을 그룹사 지속가능경영 통합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국내 NDR 5회, 실적발표 6회,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컨퍼런스콜(15), 기업탐방미팅(35) 등을 총 50회 진행하였습니다. 소액주주 대상으로는 이메일 16회, 전화(수시) 등을 통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IR 활동 현황]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2021.2.3.	국내 기관투자자	실적발표회	회사 실적 및 주요이슈 소개
2021.2.4-5	국내 기관투자자	NDR	회사 실적 및 주요이슈 소개
2021.4.28	국내 기관투자자	실적발표회	회사 실적 및 주요이슈 소개
2021.4.29-30	국내 기관투자자	NDR	회사 실적 및 주요이슈 소개
2021.8.10	국내 기관투자자	실적발표회	회사 실적 및 주요이슈 소개
2021.8.11-12	국내 기관투자자	NDR	회사 실적 및 주요이슈 소개
2021.11.2	국내 기관투자자	실적발표회	회사 실적 및 주요이슈 소개
2021.11.3-4	국내 기관투자자	NDR	회사 실적 및 주요이슈 소개
2022.2.8	국내 기관투자자	실적발표회	회사 실적 및 주요이슈 소개
2022.4.27	국내 기관투자자	실적발표회	회사 실적 및 주요이슈 소개
2022.5.18-19	국내 기관투자자	NDR	회사 실적 및 주요이슈 소개

(4) 기업정보 공개 현황

당사에 관련된 정보는 당사의 국/영문 홈페이지 (국문 <http://www.donga-st.com>, 영문 <http://en.donga-st.com>) 및 DART(<http://dart.fss.or.kr>), KIND(<http://kind.krx.co.kr>)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 국/영문 홈페이지에 정기 IR자료를 게재하고 있으며 상기 자료에 당사 IR 담당 부서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투자정보 섹션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섹션에는 정관, 이사회 규정, 주식분포 상황, 이사회 및 감사기구에 관한 사항 및 당사의 재무현황 등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 <http://www.donga-st.com/Pass.da?viewPath=/b05/association>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바 없으며, 2021년 한국거래소에서 선정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참가자들 간에 정보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정공시 정보를 한국거래소의 KIND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정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2021.02.03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0년 연간 및 4 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1.04.28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년 1 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1.08.10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년 2 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1.11.02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년 3 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2.02.08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년 연간 및 4 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2.04.27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2년 1 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영문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영문)	주요 내용(한글)
2021.04.26	Material Management Information related to Judgment of Investment	만성 판상 건선 치료제 DMB-3115의 조지아 규제당국 제3상 임상시험계획(CTA) 승인신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그 내역]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내부통제장치 현황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등에 관하여서는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결의요건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가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관계사 및 특수관계자와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거래를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요건을 가중하고 있으며, 당사 이사회 규정 14조2에 따라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 중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음료 수출 증가 예상에 따라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동아오츠카(주)로부터의 매입 금액의 증가를 예상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 특수관계자 거래규모 사전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대주주인 동아쏘시오홀딩스(주)와 2건의 자산양수도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이사회에서 바이오텍 연구소 양수의 건을 2021년 7월 30일 이사회에서 (주)참메드의 지분인수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2)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분/반기/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2021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담보제공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등에 대한 담보제공내역이 없습니다.

나. 채무보증내역

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아에스티(주)우리사주조합과 한국증권금융(주)가 체결한 차입금 120억원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비고	한도액	실행액
한국증권금융	연대보증약정 (우리사주조합취득자금대출)	12,000,000	7,196,241

다. 회사분할로 인한 연대보증에 관한사항

- 해당 사항 없음

라.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동아쏘시오홀딩스(주) (대주주)
거래종류	자산양수도
거래일자	2021.01.08
거래대상물	바이오텍 연구소

거래목적	- 바이오의약품으로 동아 ST 의 성장 동력 확보 - 연구 역량의 집중으로 바이오텍연구소와 시너지 창출 - 연구/임상/허가 Alignment 를 통한 DMB-3115 개발 가속화 및 수익창출 극대화
거래금액	6,124,282,709 원 (감정평가 가액)
내부통제절차	이사회 결의

주1) 해당 자산양수도에 영향을 주는 별도의 거래조건은 없으며, 해당 거래로 인하여 손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동아쏘시오홀딩스(주) (대주주)
거래종류	지분인수
거래일자	2021.08.26
거래대상물	(주)참메드
거래목적	- 그룹내 의료기기 사업의 통합 및 시너지 추구 - Business Model 재정립 기반
거래금액	7,616,000,000 원 (감정평가금액 최소값에 기준시가 평가한 토지건물 감정평가시 예상되는 평가증분 상당액 가산)
내부통제절차	이사회 결의

주1) 해당 자산양수도에 영향을 주는 별도의 거래조건은 없으며, 해당 거래로 인하여 손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기간동안 대주주 등에 대한 영업 거래 중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동 금액 이상의 1년 이상의 장기 공급(매입)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당사의 2021년 말 기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특수관계자명	수입		지출					
		매출	기타수익	상품 및 원재료매입	기타비용	용역비	유/무형자산취득	이자 비용	배당
지주사	동아쏘시오홀딩스(주) (*1, 2)	606,961	16,457,265	-	4,545,685	3,333,765	5,996,639	7,884	1,968,765
종속기업	Dong-A America Corp	573,262	-	-	-	-	-	-	-

	Dong-A Brasil Farmaceutica Ltda	-	-	-	316,383	-	-	-	-
	(주)참메드	9,496	1,887	-	-	-	-	-	-
	Dong-A ST India Pvt., Ltd	-	-	-	-	76,125	-	-	-
관계기업	(주)레드엔비아	1,019,998	-	-	-	-	-	-	-
기타	동아제약(주)	7,218,667	10,301	3,647,766	2,611,495	1,507,744	4,585	6,215	-
	동아오즈카(주)	248,986	-	56,116,258	7,388	-	-	-	-
	용마로지스(주)	139,921	-	-	50,200	18,740,252	-	-	-
	DA 인포메이션(주)	-	-	-	1,207,237	2,576,522	1,268,136	-	-
	에스티팜(주)	65,321	-	22,180,145	2,168,085	-	-	-	-
	아벤종합건설(주) (구,(주)철근종합건설)	16,399	-	-	361,241	121,640	27,615,550	-	-
	(주)수석	-	-	1,379,251	178,243	-	-	-	-
	에스티젠바이오(주) (구,디엠바이오(주))	7,775	-	10,886,407	14,399,752	-	-	-	-
합 계	9,906,786	16,469,453	94,209,827	25,845,709	26,356,048	34,884,910	14,099	1,968,765	

(*1) 동아쏘시오홀딩스와의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을 통하여 동아쏘시오홀딩스 바이오텍연구소를 2021년 1월 8일자로 양수하였습니다.

(*2) 동아쏘시오홀딩스(주)에 대한 기타수익은 당사의 연구소 발생 비용을 보전 받은 것으로, 비용과 상계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원칙 2-③)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현재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나, 당사는 지배구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및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추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IV. 이사회

1. 이사회 기능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당사 이사회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규정 제17조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직무집행감독권을 부여하였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할 염려가 있을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6조 및 제20조에 의거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 분기 개최되는 정기이사회 뿐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 등은 정관 제5장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승인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경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신규사업의 추진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공동대표의 결정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대표이사 승계계획의 승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 신주의 발행		
	·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등		
	·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구분	기준	
	시설투자	자기자본	100분의 10 이상
	출자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		100분의 5 이상
	단기자금의 차입		100분의 10 이상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인수, 채무면제	100분의 5 이상		
선급금 지급, 금전 및 증권의 대여, 가지급 결정		100분의 5 이상	
단일판매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매출액	100분의 5 이상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자산총액	100분의 5 이상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타회사의 임원 겸임		
기타	· 중요한 소송의 제기		
	· 준법지원인의 임면,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개정 신설 등		

당사는 법상 의무화된 사항을 기반으로 상기 심의·의결사항을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정하고 있으며, 산업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 사항에 대한 강화뿐만 아니라 추가 사항을 제정하는 것을 상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위임하거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심의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어 정관 및 이사회 규정상 심의사항에 국한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다양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권한 위임 관련

이사회는 정관 제 39 조의 2 및 이사회 규정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이사회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위임된 사항
감사위원회	· 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분·반기 회계결산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 ·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에 대한 승인, 사후평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자격심사 ·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으로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평가보상위원회	· 성과평가 및 보상 기준 수립 · 회사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 · 기타 보상 체계와 관련된 사항

(3) 이사회와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 부서는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질의응답, 추가사항 지원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 담당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서(팀)명	담당직원수(명)	직위 (해당업무 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경영기획팀	11	수석 : 4명(8년) 책임 : 4명(7년) 선임 : 3명(5년)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지원 사외이사 업무수행 및 교육 지원
재경팀	11	수석 : 1명(18년) 책임 : 2명(9년) 선임 : 8명(4년)	재무·회계 정보 등 제공
감사실	7	상무보 : 1명(6년) 수석 : 3명(19년) 책임 : 3명(13년)	업무감사 및 내부고발제도 등 내부감사 계획 및 내부감사모니터링 보고
내부회계관리팀	3	수석 : 1명(14년) 책임 : 1명(9년) 선임 : 1명(4년)	감사위원회 운영, 업무수행 및 감사위원 교육 등 활동 지원
지속가능 경영실	8	전무 : 1명 (7년) 수석 : 5명 (2년) 선임 : 2명 (3년)	CP 운영 강화 및 준법경영 문화 확산 CP 모니터링 고도화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현재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후보군 발굴, 승계 후보자 양성 및 평가와 같은 승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발굴·육성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임원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주체는 평가보상위원회이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원에 대한 평가는 평가보상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임원 인사 및 보상금 지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평가보상체계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평가보상위원회에서 매년 보완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향후 좀 더 명확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이사회 중심으로 승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와 그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사실 및 지속가능경영실을 내부감사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감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정기감사 및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내부감사사 등 기업 내부감사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인원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실은 제약업종에 특화된 리스크 및 준법경영에 대처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의 공정경쟁 및 반부패 준법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반부패 및 Compliance 관련 내부 규정 및 기준의 제·개정과 국제인증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위원회에 그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준법통제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임원급 사내변호사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경영진과 임직원의 준법여부 및 회사경영활동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한편, 다양한 준법지원활동을 통하여 당사의 조직 및 사업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중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통제 관련해서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사수준, 프로세스수준, 일반 전산수준의 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보고 및 평가 등을 반영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2020년 2월에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당사는 경영관리본부장이 공시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경영관리본부 산하에 공시 담당자 정/부를 지정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공시담당자는 의무교육 시간을 매년 이수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의 공시관련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자사주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통해 내부자거래, 단기매매차익거래 및 지분보고위반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구성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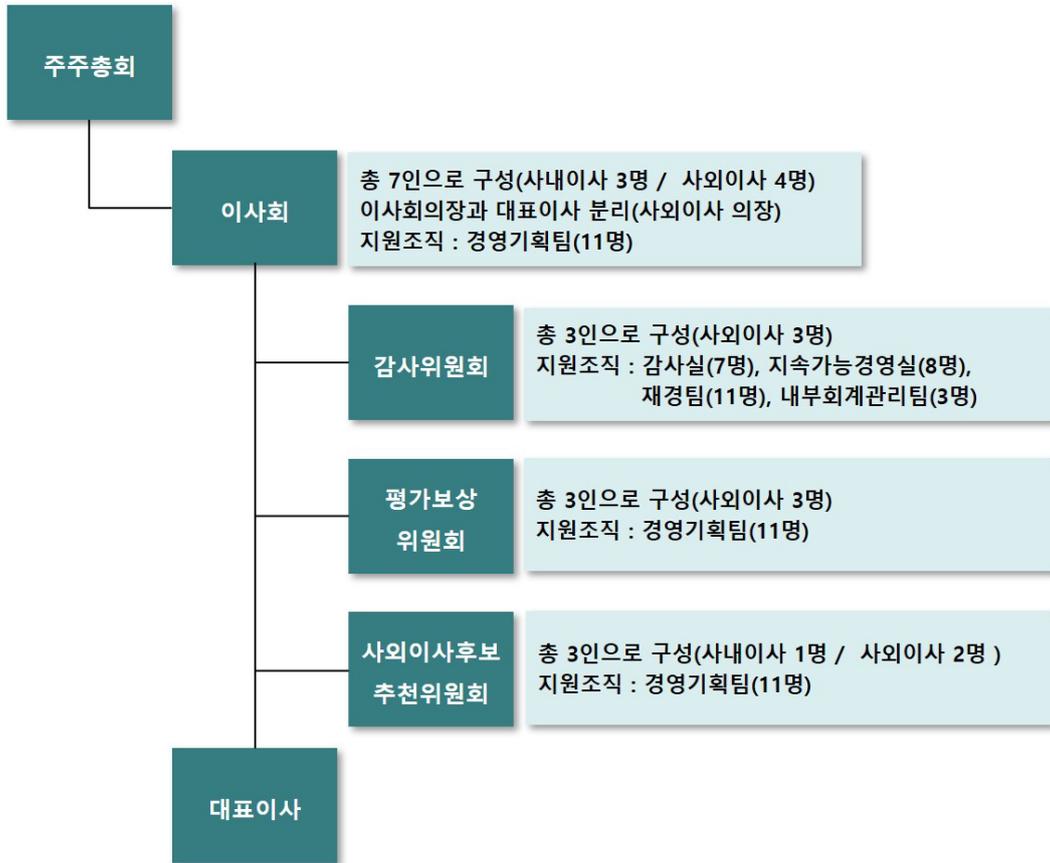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29조에 따라 3명 이상 7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최소 인원을 3명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38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최소 이사회 총원을 반영한 것이며, 최대 7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당사 규모를 고려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당사는 내부 의사결정주체인 이사회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와 분리하여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인 평가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현하고, 회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면하는 현안을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전반(김범준 이사), 제약R&D(류재상 이사), 보건의료행정(최희주 이사), 제약산업 및 정책관련 전문(김학준 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사외이사 비율 57%입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사외이사 중 6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연임중인 이사로는 최희주 사외이사와 류재상 사외이사로 총 2명입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을 분리함으로써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관련 조직도]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성별 (만나이)	직책	최초 선임일	임기만료 예정일	전문분야	주요경력
사내	김민영	남 (49)	대표이사 사장	2022.03.28	2025.03.28	경영총괄	동아쏘시오홀딩스(주) 경영기획실장 (現) 동아에스티(주) 대표이사 사장
사내	박재홍	남 (52)	사장	2022.03.28	2025.03.28	제약 R&D	Boehringer Ingelheim: Translational Medicine & Clinical Pharmacology Executive Director (現) 동아에스티(주) 사장
사내	이성근	남 (50)	경영관리 본부장	2020.03.24	2023.03.24	재무·회계 (공인회계사)	동아제약(주) CFO (現) 동아에스티(주) 경영관리본부장(CFO)
사외	김범준	남 (48)	감사 위원장	2022.03.28	2025.03.28	회계, 감사 (공인회계사)	서울대 경영학 박사 (現)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사외	류재상	남 (52)	평가보상 위원회 위원장	2018.03.27	2024.03.24	제약 R&D	Memorial Sloan-Kettering 암센터 연구원 (現)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
사외	최희주	남 (56)	이사회 의장	2018.03.27	2024.03.24	보건의료 행정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現) 법무법인 율촌 고문
사외	김학준	남 (54)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2020.03.24	2023.03.24	제약산업 및 정책	제약산업 및 관련 정책부문 전문가 (現) PA-Partners 행정사무소 대표

주 1) 제 9 기 정기주주총회 (2022.03.28)에서 김민영 사내이사, 박재홍 사내이사, 김범준 사외이사를 신규선임 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주요 역할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A)	위원장	사외이사	김학준	남	C	- 설치목적 :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 주요역할 :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으로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위원	사외이사	최희주	남	B	
	위원	사내이사	김민영	남	-	
감사위원회 (B)	위원장	사외이사	김범준	남	C	- 설치목적 :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주요역할 : 이사의 업무 감독, 자회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 선정 등
	위원	사외이사	류재상	남	C	
	위원	사외이사	최희주	남	A	
평가보상 위원회 (C)	위원장	사외이사	류재상	남	B	- 설치목적 : 임원 보수 결정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 주요역할 : 경영진 평가, 보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
	위원	사외이사	김범준	남	B	
	위원	사외이사	김학준	남	A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 선임 시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사내이사 후보자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후보자들 중에 전문성과 비전, 리더십 등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규정 제7조의2에 의하여 사외이사 후보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내이사와는 다른 시각과 경험을 가진 외부 인사를 사외이사 후보자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년 임직원을 비롯한 이사회 전원에게 당사 정도경영 규정 중 하나인 부패(뇌물)방지경영시스템 운영규정에 의한 자율준수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당사 이사회의 사내이사는 총 3명의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김민영 사내이사는 동아쏘시오그룹 지주사 기획실장 및 동아에스티 사장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당사의 비전 및 향후 경영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박재홍 사내이사는 다년간 글로벌 제약회사와 바이오텍에서 신약을 연구개발한 제약바이오 R&D 전문가로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 부문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양학 분야에서 First-in-Class와 Best-in-Class 신약 및 바이오 신약을 대상으로 전임상과 임상에서 성공적인 연구개발 및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전임상과 임상단계에 있는 신약을 라이선싱 하고 인수합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사내이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에서 다년간 근무하여 회계분야에 전문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지정한 재무/회계 전문가입니다. 또한, 다년간 동아쏘시오그룹의 제약부문 계열회사 및 당사의 CFO를 역임하여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를 통하여 이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범준 사외이사는 현재 가톨릭 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로 재임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및 경영학 박사로 회계 및 재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도가 높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여러 금융 및 회계분야에서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류재상 사외이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사)한국유기합성학회 위원, 세포신호전달계 바이오의약 국가핵심연구센터 연구원, Memorial Sloan-Kettering 암센터 연구원 등의 다수의 경험을 지닌 제약 R&D 전문가입니다. 최희주 사외이사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및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보건 의료 행정의 전문성이 풍부합니다. 김학준 사외이사는 PA-Partners 행정사무소 대표로 제약산업 및 다양한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심도있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일반적인 경영전문가 뿐만 아니라 사업적 특성에 맞는 제약 R&D 및 보건 의료행정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의안 심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 이사회는 현재 여성 이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하여 향후 여성 이사를 선임할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2020 사업연도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만료 (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윤태영	2017.03.24	2020.03.24	2020.02.29	사임	퇴직
	엄대식	2018.03.27	2024.03.24	2022.03.28	사임	퇴직
	이성근	2020.03.24	2023.03.24	2020.03.24	선임	재직
	이주섭	2020.03.24	2023.03.24	2021.03.24	사임	퇴직
	한종현	2021.03.24	2024.03.24	2022.03.28	사임	퇴직
	김민영	2022.03.28	2025.03.28	2022.03.28	선임	재직
	박재홍	2022.03.28	2025.03.28	2022.03.28	선임	재직
사외이사	김근수	2013.03.04	2022.03.29	2022.03.28	임기만료	퇴직
	우병창	2014.03.21	2020.03.24	2020.03.24	임기만료	퇴직
	최희주	2018.03.27	2024.03.24	2021.03.24	재선임	재직
	류재상	2018.03.27	2024.03.24	2021.03.24	재선임	재직
	김학준	2020.03.24	2023.03.24	2020.03.24	선임	재직
	김범준	2022.03.28	2025.03.28	2022.03.28	선임	재직

주1) 당사 정관 제31조에 의거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 연장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선임할 이사 후보자 중 사내이사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집중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는 상법에 근거하여 주주제안권 행사를 통해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내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 후보의 경우 이사회 사전검토를 통해 후보에 대한 자격 및 자질검토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방안과 후보 Pool 선정 후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확정합니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2인의 사외이사와 1인의 사내이사(사외이사 비율 66.7%)로 구성되며, 후보확정을 위한 위원회 내 토의 시에는 전문성, 충실성(Commitment), 독립성 등의 평가기준과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선임 시기별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선임되는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직전 분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각 사외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별 찬반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사회후보추천 및 선임과 관련한 프로세스 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더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모든 주주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소집통지서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안건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각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법적 기한에 준수하여 미리 제공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을 충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과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세부적인 정보 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자 정보제공 현황]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 내역
		구분	성명	
2022.03.04 (주총 24 일 전)	2022.03.28	사외이사	김범준	1. 후보자 주요 경력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최대주주와의 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5. 후보 추천 사유
		사내이사	김민영	
		사내이사	박재홍	
2021.03.02 (주총 22 일 전)	2021.03.24	사외이사	류재상	
		사외이사	최희주	
		사내이사	엄대식	
		사내이사	한종현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원 선임 시 과거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 징계기록 등을 검토하여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상황 하에서는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로 인하여 민첩한 지휘체계의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와 이미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또한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임된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집행임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되, 본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현재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현재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미등기 임원 현황]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재직기간
김민영	남	대표이사 사장	등기임원	상근	CEO	99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5 동아쏘시오홀딩스(주) 경영기획실장 22 동아에스티(주) 대표이사 사장	16
박재홍	남	사장	등기임원	상근	R&D	01 Harvard Medical School: Institute of Proteomics Postdoctoral Fellow 17 Boehringer Ingelheim: Translational Medicine & Clinical Pharmacology Executive Director 22 동아에스티(주) 사장	0
최희주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	08 가천대 보건학(박사) 12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4
류재상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	03 Northwestern 대 화학(박사) 17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장	4
김학준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11 성균관대 약학대학 사회약학 석사 14 PA-Partners 행정사무소 대표	2
김범준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	14 서울대 경영학(박사) 15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0
이성근	남	전무이사	등기임원	상근	CFO	96 서강대학교 경영학 18 경영관리본부장	9
소순종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사무	95 서울대 경영학과 14 CP 관리실장	8
신유석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99 서울대 약학(석사) 18 의료사업본부장	11
박경준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감사	02 고려대 경영학과(석사) 18 감사실장	6
박희범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개발	93 충북대학교 약학(석사) 17 개발본부장	27
박인수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93 경희대학교 화학 16 해외사업부장	29
허성욱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90 한양대학교 생물학 14 약무실장	31
이전평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12 충남대학교 제약학(석사) 19 천안공장장	28
김형헌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법무	04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법학전문대학원 18 법무실장	10
조규홍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95 우석대학교 경영학 18 의료사업정책실장	27
양호준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12 영남대학교 약학(박사) 15 달성공장장	28
양승민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04 Yale 대 화학(박사) 17 기반기술연구실장	9

장선우	남	연구위원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07 성균관대 제약학(박사) 17 제품개발연구소장	24
정수환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96 상지대학교 동물생명공학 15 진단사업부장	26
한태동	남	연구위원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14 경희대학교 화학(박사) 20 의약화학연구실장	1
도현미	여	연구위원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06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20 의약연구 2 실장	24
김윤경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사무	99 한림대학교 경제학 19 유통관리실장	22
방미영	여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개발	94 이화여자대학교 약학(석사) 17 임상개발실장	26
서동인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96 충북대학교 미생물학(석사) 17 품질보증실장	25
최수원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01 수원대학교 유전공학 19 의료사업정책실장	21
김미경	여	연구위원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13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박사) 20 의약연구 3 실장	24
임진순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17 단국대학교 약학(석사) 20 송도신공장추진팀장	24
박범수	남	연구위원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94 서강대 미생물학(석사) 20 동아쏘시오홀딩스(주) 바이오텍연구소장	28
박선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개발	03 홋카이도대학교 생물화학공학 (박사) 21 사업개발실장	1
강철중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13 세종대 MBA 21 의료기기사업부장	0
엄요현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해외	01 경희대 생물학 21 글로벌사업개발실장	0
이대우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사무	98 서울대 국제경제학 21 경영기획실장	0
조상욱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99 삼육대 생물학 21 병원사업부장	21

3. 사외이사의 책임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상법에서 요구하는 이사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충실성 등의 자격요건 및 이해관계 여부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당사에 적임인 인물을 사외이사 최종 후보자로 확정하고,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선임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모든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간의 거래내역은 없으며,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또한 없습니다.

[사외이사의 과거 재직여부 및 거래내역 현황]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할 내용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당사	계열회사	당사	계열회사	당사	계열회사
김범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학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최희주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류재상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당사는 사외이사 임기 만료 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적격성 평가(전문성, 직무공정성, 충실성, 결격요건)를 통하여 재선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중 6년(계열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당사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의 재직기간 및 장기 재직 시 사유]

성명	당사		계열회사 포함시	
	재직기간	6년 초과 시 사유	재직기간	9년 초과 시 사유
최희주	4년	-	4년	-
류재상	4년	-	4년	-
김학준	2년	-	2년	-
김범준	-	-	-	-

주 1) 상기 김범준 사외이사는 2022.03.28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내부기준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며,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직중인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매년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해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사회 내 위원회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매 분기 외부감사인과의 정례미팅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사회 담당부서를 통하여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에 앞서 안건 세부내역을 선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의 경영정보 보고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회사 내/외부 교육을 제공·안내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20조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습니다. 전담부서의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겸직 현황]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간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김범준 (감사위원)	2022.03.28	2025.03.28	가톨릭대 회계학과 부교수	(주)수산 중공업	사외이사	2021.03.31 ~ 현재	상장기업 (유가증권)
최희주 (감사위원)	2018.03.27	2024.03.24	법무법인 울촌 고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류재상 (감사위원)	2018.03.27	2024.03.24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김학준	2020.03.24	2023.03.24	PA-Partners 행정사무소 대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및 인적·물적자원 제공절차, 구체적 제공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생생한 현장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국내·외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 시찰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었으나 최근 몇 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사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의 변화에 따라 향후 사외이사들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사는 신입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현황 조기파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신규 선임된 김범준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이사회규정 제 20조에 따라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 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8조에 따라 이사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임원급의 부서장을 간사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담당부서는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안건의 사전 설명,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 개최 여부와 그 내역

당사는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를 개최한 내역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사회 개최 전후 사외이사들이 모여서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미팅을 매번 진행하여 사외이사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차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전체 사외이사	회의 사항	비고
해 당 사 항 없 음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현재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이행 평가를 실시 계획입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제도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성적 평가기준(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직원평가 등)과 정량적 평가기준(출석률, 안건 결의참여 등)을 포함하는 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외이사 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보수산정 및 재선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임기 만료 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적격성 평가(전문성, 직무 공정성, 충실성, 결격요건)를 통하여 재선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보수는 이사회 개최 빈도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여부, 자료 검토 등 관련 업무 수행시간을 고려하여 연간 보수를 책정한 후, 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별도 수당이나 회의비 명목의 경비 지급 없이 고정급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빈도 등 업무 수행시간 및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유사업계(Peer group)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에게는 별도 주식매수특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사회 운영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 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 정관 제34조의3 및 이사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2월, 4월, 7월, 10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됩니다.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 경영실적 보고와 주요 경영 이슈사항 검토 등을 위해 개최됩니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 이외의 이사는 필요시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개정된 정관 제37조에 따라 당사는 이사회 소집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이사에 통지해야 하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합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의 구체적인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회차	안건		가결여부	종류	개최일자	안건 통지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2021년	1차	결의 사항	여신 연장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1.01.15	2021.01.07	7/7
	2차	결의 사항	제 8기 결산서류 승인의 건(별도)	가결	임시	2021.02.01	2021.01.24	7/7
	3차	보고 사항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임시	2021.02.17	2021.02.09	7/7
		결의 사항	제 8기 결산서류 승인의 건(연결)	가결				
	4차	결의 사항	송도 R&D 센터 신설의 건	가결	임시	2021.02.22	2021.02.12	7/7
	5차	보고 사항	2020년 경영실적 및 2021년 경영계획 보고의 건	보고	정기	2021.02.26	2021.02.18	6/7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보고				
			2020년 ISO37001 최고 경영자 검토 결과 보고의 건	보고				
		결의 사항	제 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6차	결의 사항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임시	2021.03.24	2021.03.16	7/7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7차	결의 사항	차입금 연장의 건	가결	임시	2021.04.05	2021.03.26	7/7
	8차	보고 사항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보고	정기	2021.04.23	2021.04.15	7/7
9차	결의 사항	신규차입의 건	가결	임시	2021.05.10	2021.04.30	7/7	
		차입금 연장의 건	가결					
10차	결의 사항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임시	2021.06.09	2021.06.02	7/7	
		지배인 선임의 건						
11차	보고 사항	2021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보고	정기	2021.07.30	2021.07.22	7/7	
		2021년 안전보건관리 계획 보고의 건						
	결의 사항	㈜참메드 지분 인수 의 건	가결					
12차	결의 사항	차입금 대환의 건	가결	임시	2021.10.15	2021.10.08	7/7	
13차	보고 사항	2021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보고	정기	2021.10.22	2021.10.14	7/7	
		국민연금공단 비공개대화 진행 결과 보고의 건						
14차	결의 사항	인도 자회사 설립의 건	가결	임시	2021.12.02	2021.11.25	7/7	
2022년	1차	결의 사항	여신 연장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2.01.07	2021.12.31	7/7
	2차	결의 사항	여신 연장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2.01.21	2022.01.14	7/7
	3차	결의 사항	제 9기 결산서류 승인의 건(별도)	가결	임시	2022.02.11	2022.02.04	7/7
	4차	보고 사항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임시	2022.02.18	2022.02.11	7/7

5 차	보고 사항	2021 년 경영실적 및 2022 년 경영계획 보고의 건	보고	정기	2022.02.25	2022.02.18	6/7
	결의 사항	제 9 기 결산서류 승인의 건(연결)	가결				
	보고 사항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보고				
		2021 년 ISO37001 최고 경영자 검토 결과 보고의 건					
		2021 년 ESG 평가 내용 및 운영현황 보고의 건					
	결의 사항	제 9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결의 사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규모 사전 승인의 건	가결				
6 차	결의 사항	사모사채 발행의 건	가결	임시	2022.03.21	202203.14.	7/7
		신규 차입의 건					
7 차	결의 사항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임시	2022.03.28	2022.03.21	7/7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의 건					
8 차	보고 사항	2022 년 1 분기 경영실적	보고	정기	2022.04.27	2022.04.20	7/7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회 의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의사록을 영구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규정 제12조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개별 이사의 이사회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찬성/반대)을 공시하여 이사회 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

구분	회차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7 차	8 차	9 차	10 차	11 차	12 차	13 차	14 차	비고
	개최 일자	2021. 01.15	2021. 02.01	2021. 02.17	2021. 02.22	2021. 02.26	2021. 03.24	2021. 04.05	2021. 04.23	2021. 05.10	2021. 06.09	2021. 07.30	2021. 10.15	2021. 10.22	2021. 12.02	
사내	엄대식	출석														
	한중현	-	-	-	-	-	출석	'21.03 선임								
	이성근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이주섭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	-	-	-	-	-	-	-	'21.03 퇴임
사외	김근수	출석														
	최희주	출석														
	류재상	출석														
	김학준	출석														

[2022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

구분	회차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7 차	8 차	비고
	개최 일자	2022.01.07	2022.01.21	2022.02.11	2022.02.18	2022.02.25	2022.03.21	2022.03.28	2021.04.27	
사내	김민영	-	-	-	-	-	-	출석	출석	'22.03 선임
	박재홍	-	-	-	-	-	-	출석	출석	'22.03 선임
	이성근	출석								
	엄대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	'22.03 퇴임
	한중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	'22.03 퇴임
사외	김범준	-	-	-	-	-	-	출석	출석	'22.03 선임
	최희주	출석								
	류재상	출석								
	김학준	출석								
	김근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	'22.03 퇴임

[개별이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성명	구분	이사회 재직 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 개년 평균	최근 3 개년			최근 3 개년 평균	최근 3 개년			
				2021	2020	2019		2021	2020	2019	
엄대식	사내	2018.03.27 ~2022.03.2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한중현	사내	2021.03.24 ~2022.03.28	100	100	-	-	100	100	-	-	-
이성근	사내	2020.03.24 ~현재	96.5	92.9	100	-	100	100	100	100	-

이주섭	사내	2020.03.24 ~2021.03.24	95	100	90	-	100	100	100	-
윤태영	사내	2017.03.24 ~2020.02.29	87.5	-	75	100	100	-	100	100
이동훈	사내	2017.03.24 ~2019.12.31	100	-	-	100	100	-	-	100
김민영	사외	2022.03.28 ~현재	-	-	-	-	-	-	-	-
박재홍	사외	2022.03.28 ~현재	-	-	-	-	-	-	-	-
김근수	사외	2013.03.04 ~2022.03.28	95.3	100	100	86	100	100	100	100
우병창	사외	2014.03.21 ~2020.3.24	100	-	100	100	100	-	100	100
최희주	사외	2018.03.27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류재상	사외	2018.03.27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김학준	사외	2020.03.24 ~현재	100	100	100	-	100	100	100	-
김범준	사외	2022.03.28 ~현재	-	-	-	-	-	-	-	-

주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6. 이사회 내 위원회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자세한 설치현황, 주요역할, 구성현황은 세부원칙4-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현재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및 평가보상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되는 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중 2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2017년 9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도입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동 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총 3명의 위원 중 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내이사 1명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관련 법령 및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당사에 적합한 후보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2) 평가보상위원회

당사는 2013년 7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평가보상위원회를 도입하였습니다. 평가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위원을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보상제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평가보상위원회는 임원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매년 회사 및 대표이사의 성과를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로 상근감사제도를 운영해왔으나, 감사제도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18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하여 감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규정 등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각 위원회 별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설치목적, 구성, 권한 및 책임 소집, 결의방법, 부의사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각 이사들의 출석 및 참여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사 재선임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13조의 2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이사들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위원회 결의에 이의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연도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021년	1차	2021.02.26	3/3	결의사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제 8 기 정기주주총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2022년	1차	2022.02.25	3/3	결의사항	제 9 기 정기주주총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최근 3개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별이사 출석 현황]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	2020	2019
사내	엄대식	100	100	100	100
사내	김민영	-	-	-	-
사외	우병창	100	-	100	100
사외	최희주	100	100	-	-
사외	류재상	100	-	100	100
사외	김학준	100	100	-	-

주1) 2020.03.24 우병창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주2) 류재상 사외이사는 2020.04.24까지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주3) 최희주, 김학준 사외이사는 2020.04.24 이사회에서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주4) 2022.03.28, 엄대식 사내이사가 사임하였으며, 김민영 사내이사가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평가보상위원회 개최 내역]

연도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2021년	1차	2021.02.26	3/3	결의 사항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020년 회사,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안) 승인의 건	가결
					2021년 회사,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계획(안) 승인의 건	가결
	2차	2021.03.24	3/3	결의 사항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021년 회사,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계획(안) 승인의 건	가결
2022년	1차	2022.02.25	3/3	결의 사항	2021년 회사,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안) 승인의 건	가결
					2022년 회사,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계획(안) 승인의 건	가결

주 1) 당사는 2021.02.26 류재상 사외이사를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나, 2021.03.24 정기주주총회에서 류재상 사외이사가 재선임 됨에 따라 2021.03.24 평가보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재선임하였습니다.

주 2) 상기 '2021년 회사,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계획(안) 승인의 건'은 세부 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2021.03.24에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근 3개년 평가보상위원회 개별이사 출석 현황]

성명	구분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	2020	2019
사외	최희주	100	-	100	100
사외	김근수	100	100	100	100
사외	류재상	100	100	100	100
사외	김학준	100	100	-	-
사외	김범준	-	-	-	-

주 1) 김학준 사외이사는 2020.04.24 이사회에서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고, 최희주 사외이사는 2020.04.24 까지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주 2) 김범준 사외이사는 2022.03.28 이사회에서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고, 김근수 사외이사는 2022.03.28 임기만으로 퇴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관련 사항은 본 보고서 세부원칙 9-②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 감사기구

1. 내부 감사기구

(핵심원칙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정책

가.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정관 제39조의3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요건을 상회하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며, 공인회계사 자격증과 경영분야의 박사학위를 보유한 김범준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는 상기 규정을 충족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이사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15~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98)	2022.03.28 신규선임
위원	사외이사	최희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한국상장회사 감사회 정회원	2021.03.24 재선임
위원	사외이사	류재상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원 교수 한국상장회사 감사회 정회원	2021.03.24 재선임

나. 당사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정관 제39조의 3에 따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제정된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는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감사위원의 의무, 위원회의 구성, 회의의 소집 등 운영 절차 및 부의안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내/외 교육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회사의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의3에 명시되

어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

가.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 정관 또는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감사위원회 규정)을 가지고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주요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부의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중지청구 여부 · 영업보고의 요구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감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 자회사의 업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사항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에 관한 사항 ·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분·반기 회계결산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 · 외부감사인 선임, 변경 및 해임에 대한 승인 ·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수령 ·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수령

나. 당사는 감사위원이 감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법규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회계관리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1.02.26 및 2021.11.12 감사위원회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동향 및 심화 교육을 각각 1시간씩 실시하였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2021년 외부 교육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외부 교육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주요교육내용
2021.01.18	상장회사감사회	류재상	美 바이든 시대, 국내 기업의 사업환경 변화
2021.02.15	상장회사감사회	류재상	2021년 주주총회 대비 기관투자자의 권리 강화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
2021.04.26	상장회사감사회	류재상	ESG 경영과 감사(감사위원)의 역할
2021.06.21	상장회사감사회	김근수 ¹⁾ , 최희주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지형의 변화
2021.10.25	상장회사감사회	김근수 ¹⁾	2021년 기말감사 시 감사(감사위원회)가 유의해야 할 주요 점검사항

1) 상기 김근수 감사위원은 2022.03.28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감사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하거나 회사 내 감사조직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와 관련된 거래처에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 관계서류 및 장부, 증빙,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회사의 감사조직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임직원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조사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0조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거나 외부감사인의 보고를 요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여부와 중지청구 여부를 결의합니다.

마.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의3에 따라 감사위원이 직무수행시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부감사 부서로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당사 및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업무 감사에 대한 계획(안)을 감사위원회에서 승인받고, 그 결과를 정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정기 감사 외에 수시 및 특별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1명의 임원(상무보)과 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가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감사지원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명	직원수	근속연수	전문성
감사실	7명	상무보 1명(6년) 수석 3명(19년) 책임 3명(13년)	한국공인회계사(CPA) 1명 기업내부감사사(상장협) 4명 내부감사사 1명

바.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경조직에서 매 분기 회계결산 결과, 회계검토 및 감사 시 주요 이슈사항을 보고하고 있으며, 매 분기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계획, 중점감사사항 및 내부통제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 당사는 감사위원이 회의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상정 안건을 미리 송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감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도록 동 규정 명시하여 감사위원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보수 체계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책정함에 있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및 법적책임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가 동일하게 2개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어 감사위원인 사외이사과 감사위원 아닌 사외이사와의 보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위원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필요시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소집일 3일전 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만일 위원이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영구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

고 출석한 감사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은 없는지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책임감 있는 의결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의 개별 참석 및 찬반여부를 정기보고서인 사업보고서 및 분 반기보고서를 통해 매 분기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6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022년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6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주요 보고사항으로는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내부감시장치 운영 현황 보고, 감사실의 내부감사결과 및 감사계획 보고, 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소 청구 경과 보고, 내부회계관리자 적격성 평가 결과 보고 등이 있었으며, 주요 결의사항으로는 매 분기 회계결산 승인, 감사보고서 승인,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승인,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감사위원장 승인의 건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대면회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보고한 후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2021년 2월 17일과 2022년 2월 18일에 대표이사로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현황과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은 후, 2021년 2월 26일과 2022년 2월 25일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작성 및 승인하여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내역]

연도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021년	1차	2021.02.17	3/3	보고사항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보고사항	내부감시장치 운영현황 보고의 건	보고
	2차	2021.02.26	3/3	결의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결의사항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평가의견서 승인의 건	가결
				보고사항	2020년 하반기 내부감사 보고의 건	보고
				결의사항	2021년 상반기 내부감사 계획 승인의 건	가결
	3차	2021.03.16	3/3	결의사항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결의사항	제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의견 확정건의 건	가결
	4차	2021.05.14	3/3	결의사항	2021년 1분기 결산 승인의 건	가결
				결의사항	2021년 2분기 결산 승인의 건	가결
	5차	2021.08.13	2/3	보고사항	2021년 상반기 내부감사 보고의 건	보고
				결의사항	2021년 하반기 내부감사 계획 승인의 건	가결
	6차	2021.11.12	3/3	결의사항	2021년 3분기 결산 승인의 건	가결
				보고사항	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소 청구 경과 보고의 건	보고

				보고사항	2021년 내부회계관리자 적격성 평가 결과 보고의 건	보고
				보고사항	2021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2022년	1차	2022.01.28	3/3	결의사항	FY2020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승인의 건	가결
				결의사항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가결
	2차	2022.02.18	3/3	보고사항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보고사항	내부감시장치 운영현황 보고의 건	보고
	3차	2022.02.25	3/3	결의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결의사항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평가의견서 승인의 건	가결
				보고사항	2021년 하반기 내부감사 보고의 건	보고
	4차	2022.03.21	3/3	결의사항	2022년 상반기 내부감사 계획 승인의 건	가결
				결의사항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5차	2022.03.28	3/3	결의사항	제9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의견 확정건의 건	가결
				결의사항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6차	2022.05.12	3/3	결의사항	2022년 1분기 결산 승인의 건	가결
보고사항				2022년 내부회계관리 계획 보고	보고	

[개별 감사위원 위원회 출석현황]

구분	연도	2021년						2022년						비고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1차	2차	3차	4차	5차	
사외	개최일자	02.17	02.26	03.16	05.14	08.13	11.12	01.28	02.18	02.25	03.21	03.28	05.12	
	김근수	출석	-	-	2022.03.28 임기만료									
	최희주	출석												
	류재상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김범준	-	-	-	-	-	-	-	-	-	-	출석	출석	2022.03.28 신규선임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 출석현황]

구분	성명	위원 재직기간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	2020	2019
사외이사	김근수	2018.03.27~2022.03.28	100	100	100	100
사외이사	우병창	2018.03.27~2020.03.24	100	-	100	100
사외이사	최희주	2018.03.27~현재	100	100	100	100
사외이사	류재상	2020.03.24~현재	75	83	67	-
사외이사	김범준	2022.03.28~현재	-	-	-	-

주 1) 우병창 사외이사가 2020.03.24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류재상 사외이사는 2020.03.24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주 2) 김근수 사외이사가 2022.03.28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김범준 사외이사는 2022.03.28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2. 외부감사인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제10조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 평가기준을 수립 및 승인하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후보 회계법인들로부터 선임제안서를 수령하여 충분한 검토 후, 각 감사위원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합산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2018년 1회, 2019년 1회, 2022년 1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개최된 회의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 평가기준을 승인하였으며, 감사품질 및 입찰가격의 평가 비중과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의 점수 배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개최된 회의에서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으며, 각 후보 회계법인들의 제안서 충실도 및 감사계획, 감사시간, 감사품질, 입찰가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삼일회계법인이 당사의 2019.01.01 ~ 2021.12.31 기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외부감사인 최초 선임 이후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선임 시 제안한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현황, 감사계획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커뮤니케이션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 사후 평가를 매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수령 이후 수행하였고, 이를 감사위원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외부감사인 자율선임 6개 사업연도 중 후반기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선임을 2022년 1월 28일 감사위원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기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을 회계법인 자체의 역량, 제약 바이오 산업 및 그룹사에 대한 전문성, 높은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업무수행팀의 역량 등을 근거로 하여 재평가한 후 재선임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01.01 ~ 2024.12.31 기간 동안 삼일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는 2021년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에게 법인세 경정청구에 관련한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이를 제공 받기에 앞서 2021년 5월 14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1분기 결산 승인과 함께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제공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1)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 현황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매 분기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4회, 보고서 제출일 현재 2022년에는 총 2회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매 분기 정례화 되어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021.02.26, 2021.05.14, 2021.08.13, 2021.11.12에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었으며,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유의적 사항, 핵심감사 사항, 감사결과 및 감사인의 독립성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에는 2022.02.25, 2022.05.12에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었으며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유의적 사항, 핵심감사 사항, 감사결과 및 감사인의 독립성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내부감사기구의 역할과 책임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핵심감사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여부

당사는 2021 년 및 2022 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별도 및 연결 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적기한을 준수하여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

사업연도	구분	제출일	정기주주총회일	기한준수여부	외부감사인
2020	별도재무제표	2021.02.09	2021.03.24	○	삼일회계법인
	연결재무제표	2021.02.23		○	삼일회계법인
2021	별도재무제표	2022.02.11	2022.03.28	○	삼일회계법인
	연결재무제표	2022.02.25		○	삼일회계법인

VI.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아쏘시오그룹에 속한 회사로서, 2022년 1분기말 기준 동아쏘시오그룹에는 당사를 포함한 28개의 계열회사가 있으며, 상장 3개사, 비상장 25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연도 말 기준 계열회사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열회사 세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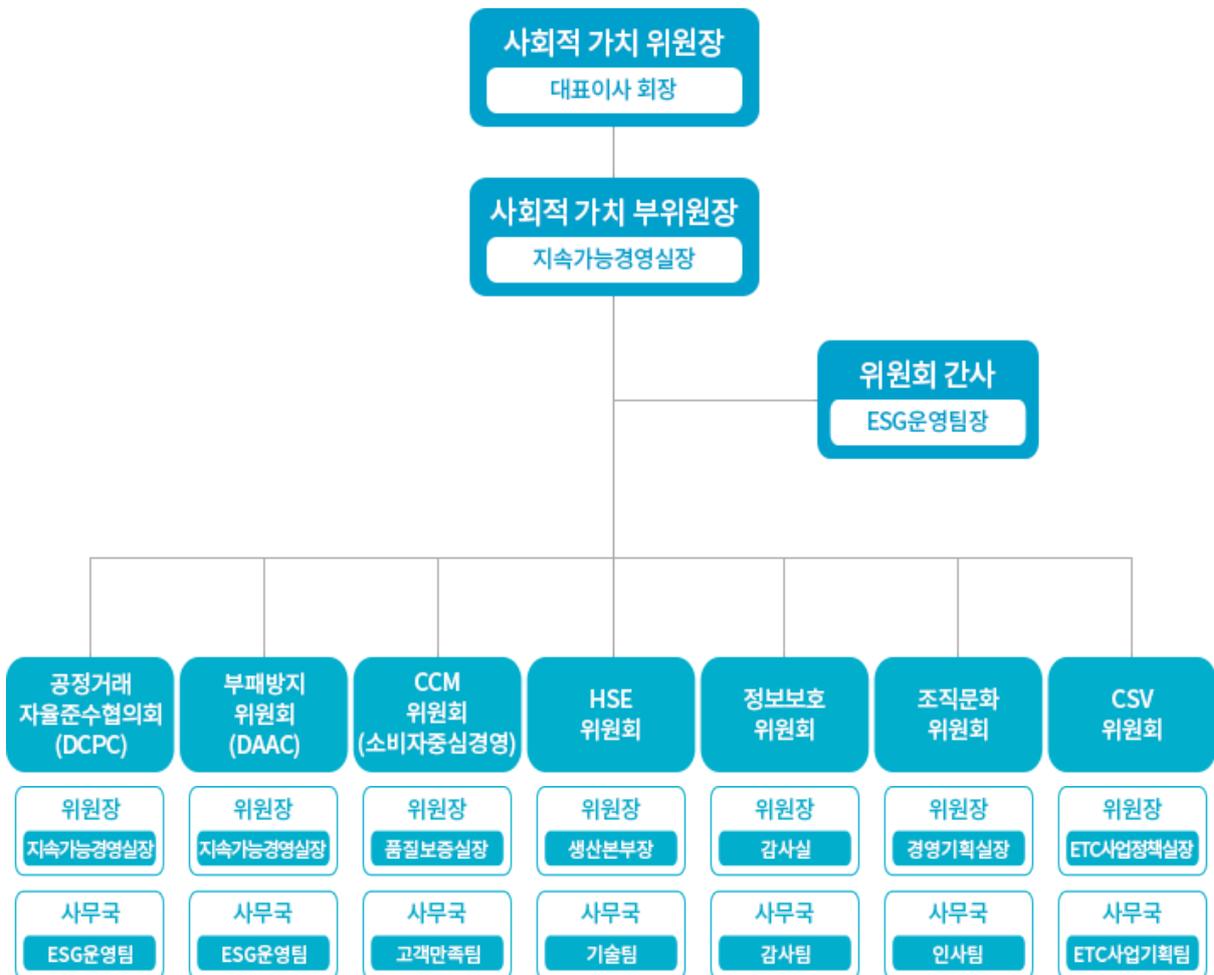
(기준일 : 2022.03.31)

구분	회사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내용	비고
상장사	3	동아쏘시오홀딩스(주)	204-81-00130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동아에스티(주)	204-86-40122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에스티팜(주)	303-81-52269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비상장사	25	동아제약(주)	204-86-40118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에스티젠바이오(주) (구 디엠바이오(주))	475-88-00070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주)수석	204-81-12790	병유리 제조 및 판매	-
		용마 LOGIS(주)	211-86-40630	운수창고업	-
		디에이인포메이션(주)	204-81-97673	IT 솔루션	-
		(주)인터스파크	311-81-33977	산업단지개발사업	-
		(주)아벤종합건설 (구 (주)철근종합건설)	135-81-00741	건설업	-
		동아오츠카(주)	123-81-09055	음식료품 제조업	-
		(주)동천수	511-81-23555	생수 제조 및 판매	-
		디에스프론티어(주) (구 동아메디케어(주))	114-88-00821	타 회사 지분 인수 및 경영관리업	-
		(주)참메드	123-86-01005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
		(주)엔에스인베스트먼트	236-87-00013	창업에 대한 투자	-
		Neon Global co., Ltd.	-	기능성 건강음료 판매	해외법인
		Dong-A America Corp.	-	음식료품 제조 및 판매	해외법인
		소주동아음료	-	음료 생산과 판매	해외법인
		Dong-A Brasil Farmaceutica Ltda	-	의약품 판매	해외법인
		J Box co., Limited	-	기능성 건강음료 판매	해외법인
		Scion Global co., Limited	-	기능성건강음료 판매	해외법인
STP America research Corp	-	의약품 연구 개발	해외법인		
CHAMMED(TIANJIN) COMMERCIAL, LTD.	-	의료기기 판매	해외법인		

		ANAPATH SERVICES	-	의약품 연구 개발	해외법인
		ANAPATH RESEARCH	-	의약품 연구 개발	해외법인
		Levatio Therapeutics, LLC.	-	의약품 연구 개발	해외법인
		Dong-A ST India Pvt.	-	의약품 판매	해외법인
		Vernagen	-	의약품 연구 개발	해외법인
합계	28	-	-	-	-

2. 사회적가치 경영

당사는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0년 사회적 가치위원회를 설립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사회적가치위원회는 ①준법과 공정거래, ②부패방지, ③인권정책, ④사업안전보건, ⑤정보보호, ⑥환경보호, ⑦사회공헌, ⑧소비자보호 등 사회적가치경영 8대 원칙을 기본으로 사회 발전과 기업의 경제적가치를 함께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7개 분과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동아에스티 가치사슬 및 전체 조직에 걸친 CSR&CSV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당사의 사회적 가치 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준법경영

당사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Compliance Program을 운영 중에 있으며, Compliance Program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하고, 대표이사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 전 임직원 자율준수서약, 부패방지방침 제정 및 배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31일 반부패경영시스템인 ISO 37001을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21년 5월 13일 재인증 받았습니다. 또한 1년 단위로 실시되는 사후관리심사도 2회 통과하는 등 준법경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Compliance Program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준법경영란에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P운영조직, CP 운영현황, 사업관계자CP홈페이지 등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donga-st.com/Pass.da?viewPath=/b04/CP_group

또한 당사는 임직원과 사업관계자가 공정거래 위반 행위, 부패관련 법규 위반 행위 등을 제보할 수 있는 CLEAN :D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을 통한 조사 및 조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소비자중심경영

소비자중심경영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 및 평가하고 있으며, 당사는 2017년 전문의약품 전문기업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인증 받은 이후 2년 주기로 실시되는 CCM(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심사를 잘 수행하여 3회 연속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고객 관점의 패키지 디자인 변경을 진행해 조제 오류 예방을 통한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도모하는 등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받아 2021년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 및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CCM 사무국에서는 VOC(고객의 소리) 응대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조제현장을 방문해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는 '찾아가는 CS제도' 운영 및 제품응대 매뉴얼 구축 등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소비자 권익 확대와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속가능경영과 맞닿아 있으므로, 앞으로도 좋은 약을 만들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소비자 곁에서 소비자의 건강한 삶을 응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Ⅶ.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분	핵심 지표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상세 설명	(전년도) 준수여부	
		○	X		○	X
주주	① 주주총회 4 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V	3 주전 공고		V
	② 전자투표 실시	V		삼성증권을 통한 전자투표 실시	V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V		2022.03.28(월) 개최 집중일 : 2022.03.25/30/31	V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 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V			V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V			V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V			V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V		2021.03.24 이사회결의로 최희주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	V	
	⑧ 집중투표제 채택		V			V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V			V
	⑩ 6 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V		2022.03.28 김근수 사외이사 임기만료 퇴임		V
감사 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 회 이상 교육 제공	V		상장회사감사회 주관 교육 (2021.01.18, 2021.02.15, 2021.04.26, 2021.06.21, 2021.10.25)	V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V			V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V		김근수 감사위원 (2022.03.28 임기만료) Ph.D. in Fina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99) (현)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과 부교수 ('05 ~ 현재) 김범준 감사위원 (2022.03.28 신규선임) 서울대 경영학박사('14) 공인회계사('98) (현)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회계학과장 ('15 ~ 현재)	V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 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V		2021 년 ~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기준 총 6 회 회의 개최	V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V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 3 조 제 4 항에 명시	V	

[첨부] 관련 규정

(1) 정관

동아에스티주식회사 정관

2013.03.04 제정

2014.03.21 개정

2018.03.27 개정

2019.03.29 개정

2021.03.24 개정

2022.03.2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동아에스티주식회사(영문 Dong-A ST Co.,Ltd.)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의약품부외품, 화공약품, 수의약품, 농예약품, 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제조, 수출 및 판매업
2. 의약품소분업
3. 연구, 개발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 등의 제공업 및 관련 용역 수탁업
4. 한약재 수출입 및 판매업
5. 의료기기, 위생용품의 제조, 수입, 임대, 수리 및 판매업
6. 식료품, 식품첨가물, 인삼제품의 제조 및 매매업
7. 화장품, 세제, 세정제, 비누, 도료,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및 매매업
8. 효소의 제조 및 매매업
9.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0. 수입품의 판매 및 위탁업
11.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업
12. 전산용역 및 임대업
13. 조림, 육림 및 약초재배업(양속제외)
14. 창고업 및 자동차 운수사업
15. 기계·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 및 매매업
16. 의약품가공수탁, 제조시설 및 기구임대업
17. 교육 서어비스업
18. 금형 및 기타장치 제조 및 매매업
19. Engineering용역업
20. 주류 수출입 중개업
21. 통신판매업
22. 자가측정 대행업
23.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24. 단미사료제조업
25. 주택의 건설, 공급, 판매 및 그 시공업
26. 조립식 주택사업
27. 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업
28. 아파트형 공장건설, 분양 및 임대업
29. 택지, 공장부지 조성 및 공급업
30. 상가, 업무용 시설의 건설, 공급, 판매 및 그 시공업
31. 식품의 유통전문판매업
32. 인터넷 관련 전자상거래 사업
33.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본호 신설 2019.03.29>

34. 시장조사, 경영자문, 경영관리대행 및 컨설팅업 <본호 신설 2019.03.29>

35. 전 각호와 관련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본호 개정 2019.03.29>

제3조(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분공장과 지점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①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onga-st.com>)에 게재한다.
<본항 개정 2014.03.21>

②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의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만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삼백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본항 개정 2021.03.24>

제7조의 3(상환주식) ① 회사는 제7조의 2에 따른 우선주식을 이사회의 결의로 또는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제7조의 2 제7항에 정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발행가액,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상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회사가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⑤ 회사는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은 날 또는 상환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주주에게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한다.

제7조의 4(전환주식) ① 회사는 제7조의 2에 따른 우선주식을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주식의 전환비율은 우선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전환청구 기간은 제7조의 2 제7항에 정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03.24>

제7조의 5(상환전환주식) ① 회사는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환 및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7조의 3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7조의 4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본항 개정 2021.03.24>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실물로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본조 개정 2019.03.29>

제9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해당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삭제) <2021.03.24>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의 3(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은 제외한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18.03.27>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우리사주조합과 이 회사간 체결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본조 개정 2021.03.24>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업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본항 개정 2019.03.29>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본항 개정 2021.03.24>

제12조(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21.03.24>

제13조(기준일) ① (삭제) <2021.03.24>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21.03.24>

제3장 사 채

제14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 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전환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본항 개정 2021.03.24>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 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그 발행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삭제) <2021.03.24>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개정 2021.03.24>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 개정 2019.03.29>

제4장 주 주 총 회

제17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22.03.28>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29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② (삭제) <2018.03.27>

제30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삭제) <2018.03.27>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2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 약간명의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의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②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전반업무를 통할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일상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제34조의 2(삭제)

제34조의 3(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제35조(삭제) <2018.03.27>

제36조(삭제) <2018.03.27>

제37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이사회 소집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본항 개정 2022.03.28>

③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18.03.27>

④ (삭제) <2018.03.27>

제38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제39조의 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투자자문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평가보상위원회 <본호 신설 2018.03.27>
4. 감사위원회 <본호 신설 2018.03.27>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본호 신설 2018.03.27>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의 3(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선임한다.

<본항 신설 2018.03.27>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제41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상담역 또는 고문을 약간명 위촉할 수 있다.

제6장 계 산

제42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9.03.29>

제44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8.03.27>
- ④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분기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제46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③ 미지급배당금에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2019.03.29>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2021.03.24>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2022.03.28>

(2) 이사회 규정

이사회 규정

2013. 03. 04. 제정

2018. 04. 27. 개정

2020. 02. 2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동아에스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에 관한 기본사항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3 조의 2 (대표이사 승계 계획) 회사는 대표이사의 승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 받아야 하며, 승계계획 실행 시 이사회는 승계절차 이행을 감독한다. <개정 2020.02.28>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서 구성한다.

제 5 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 제34조 제1항에 의거 이사 중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개정 2018.04.27>
- ② 의장 유고 시에는 정관 제34조 제1항에 의거 연장자 순으로 의장을 대행한다.
<개정 2018.04.27>
-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신설 2018.04.27>
- ④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04.27>

제 6 조 삭제 <2018.04.27>

제 3 장 회 의

제 7 조 (이사회 종류) <개정 2018.04.27>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2월, 4월, 7월, 10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04.27>
- ③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소집한다. <신설 2018.04.27>

제 8 조 삭제 <2018.04.27>

제 9 조 삭제 <2018.04.27>

제 10 조 (소집권자)

- ① 소집권자는 정관 제37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 의장으로 한다. <개정 2018.04.27>
- ② 삭제 <2018.04.27>
- ③ 의장 이외의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8.04.27>

제 10 조의 2 (소집절차) <신설 2018.04.27>

-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1 조 삭제 <2018.04.27>

제 12 조 (결의의 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정관 제38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개정 2018.04.27>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에 대한 사전승인
 2.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3.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사전승인
 <신설 2018.04.27>
- ③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04.27>
-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27>
- ⑤ 이사는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4.27>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27>

제 13 조 (부의사항)

① 다음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 (3) 영업보고서의 승인
- (4) 재무제표의 승인
- (5) 정관의 변경
- (6) 자본의 감소
-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개정 2018.04.27>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10)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개정 2020.02.28>
-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13)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5) 이사의 보수 <개정 2020.02.28>
-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서의 보고
-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신규사업의 추진 <개정 2018.04.27>
- (3) 삭제 <2018.04.27>
-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의 선임 및 해임
- (6) 공동대표의 결정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12) 삭제 <2018.04.27>
- (13) 삭제 <2018.04.27>

- (14) 삭제 <2018.04.27>
- (15) 삭제 <2018.04.27>
-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20) 대표이사 승계계획의 승인 <개정 2020.02.28>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 100분의 10 이상인 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27>
- (2)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 100분의 5이상인 단일판매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개정 2018.04.27>
- (3)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개정 2018.04.27>
- (4)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출자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
<개정 2018.04.27>
- (5)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선급금 지급, 금전 및 증권의 대여, 가지급 결정 <신설 2018.04.27>
- (6) 신주의 발행
-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8) 준비금의 자본전입
- (9) 전환사채의 발행
-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1)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단기자금의 차입
<개정 2018.04.27>
- (12)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인수, 채무면제 <개정 2018.04.27>
-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14) 자기주식의 소각
- (15) 결손의 처분 <개정 2018.04.27>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타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3) 준법지원인의 임면,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개정 <신설 2018.04.27>
-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04.27>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개정 2018.04.27>
3.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보고 <신설 2018.04.27>
4.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상황 보고 <신설 2018.04.27>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27>

제13조의2 (이사회 내 위원회) <신설 2018.04.27>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재결의 할 수 없다.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 운영방안은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르며, 위원회 규정 개정은 이사회에서 하여야 한다.

제13조의3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후보자의 전문성·독립성)

- 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전문성 : 제약산업, 법률, 경영, 경제, 금융, 회계, 세무 등
 2. 독립성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기타 회사와의 이해관계 <개정 2020.02.28>

제 14 조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사항)

- ① 회사가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04.27>
- ②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의 경우 연초에 1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의 10% 미만인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27>
- ③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전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5 조 삭제 <2018.04.27>

제 16 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7 조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간사) 이사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둔다.

제 19 조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8.04.27>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8.04.27>
- ③ 의사록은 영구 보존한다.

제 20 조 (사외이사의 활동지원 등) <신설 2018.04.27>

- ①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사외이사 독립성 평가)

회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외이사 독립성을 평가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0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2.2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2018. 04. 27. 제정
2019. 02. 28. 개정
2020. 02. 2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이사회규정 등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감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위원회 출석 및 답변 요구
 3.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청
 4.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5.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6. 회사 내 감사조직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독
 7. 자회사 감사조직의 활용 등

8.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로부터 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승계계획)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자 또는 회계부서 담당임원의 승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감사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하며, 승계계획 실행 시 감사위원회는 승계절차 이행을 감독한다. <신설 2020.02.28>

제4조 (의무)

-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5조 (위원회의 구성)

- ① 감사위원은 이사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상 요건을 갖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 3 장 운 영

제7조 (회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 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8조 (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감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의결방법)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감사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중지청구 여부
- (2) 영업보고의 요구
-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 (2) 자회사의 업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 (3)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사항
- (4)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에 관한 사항
- (5)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분·반기 회계결산 승인
- (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
- (7) 외부감사인 선정 <개정 2019.02.28>
- (8) 외부감사인 해임에 대한 승인 <신설 2019.02.28>
- (9)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신설 2019.02.28>
-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수령 <개정 2019.02.28>
- (11)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수령 <개정 2019.02.28>

(12)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신설 2019.02.28>

(13) 회사가 지정감사인 재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신설 2019.02.28>

(14) 내부고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2.28>

(15) 내부회계관리자 또는 회계부서 담당임원 승계계획의 승인 <신설 2020.02.28>

제10조의2 (감사위원 독립성 평가) 회사는 감사위원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평가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28>

제10조의3 (감사위원회 활동지원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만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02.28>

제11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의사록은 영구 보존한다.

제12조 (규정의 개정) 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2.2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2017.09.22 제정

2020.02.28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 내에 설치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권한)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의 주주제안권에 의하여 후보가 적법하게 추천된 경우, 해당 후보를 포함시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사외이사 중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6조 (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자격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7조의2 (사외이사 후보자의 전문성·독립성)

-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전문성 : 제약산업, 법률, 경영, 경제, 금융, 회계, 세무 등
2. 독립성 :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기타 회사와의 이해관계

<2020.02.28 신설>

제8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통지의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록)

- ①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2.2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평가보상위원회 규정

평가보상위원회 규정

2013.07.10 제정

2018.04.27 개정

2019.04.1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아에스티(이하 "회사"라고 한다) 이사회의 평가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원"이란 상무에 종사하고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관리자를 의미하며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신설 2018.04.27>

제2조 (적용범위)

-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회사, 임원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4.27>

제3조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개정 2018.04.27>

- ① 위원회는 임원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기준을 수립한다. <개정 2018.04.27>
- ② 위원회는 매년 회사 및 대표이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1항에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18.04.27>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개별 임원의 성과평가와 보상은 제1항에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대표이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8.04.27>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8.04.27>

제 2 장 구 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8.04.27>

- 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이사 3인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인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8.04.27>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8.04.27>
-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사외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개정 2018.04.27>

제 3 장 회 의

제6조 (위원회의 소집) <개정 2018.04.27>

-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04.27>
- ② 삭제 <2018.04.27>
-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04.27>

④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04.27>

⑤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4항의 절차 없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8.04.27>

제7조 삭제 <2018.04.27>

제8조 삭제 <2018.04.27>

제9조 (의결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4.27>

제10조 (부의 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4.27>

1. 임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 및 보상기준 수립 <개정 2018.04.27>
2. 매 사업연도 회사 및 대표이사 성과목표의 승인 <신설 2018.04.27>
3. 매 사업연도 회사 및 대표이사 성과의 평가 <신설 2018.04.27>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개정 2018.04.27>

제11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3조 (통지의무)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7>

제14조 (간사)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04.27>

제 4 장 보수의 지급

제15조 (보수의 종류)

- ① 임원의 보수는 해당 직위와 개인의 실적에 따른 기본연봉과 회사 실적평가 결과에 연동하여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성과연봉 및 퇴직금으로 구성한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관하여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임원의 보수)

- ① 기본급여는 <별첨1> 임원 기본급여테이블에 따르며, 기본급여의 인상률은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04.27>
- ② 성과연봉은 회사의 정해진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8.04.27>

제17조 (지급방법)

- ① 기본급여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월단위 정액으로 지급하며, 성과연봉은 회사 사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한다.
- ② 보수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자에 대한 보수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제 18조 (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19조 (단수계산) 제 보수계산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상한다.

제20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0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04.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